

주식회사 마스틴제십일호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이사회 의사록

주식회사 마스틴제십일호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회사”)의 이사회가 다음과 같이 개최되다.

일 시: 2024년 11월 05일(화) 오전 11시
장 소: 서울시 서초구 강남대로 465, A동 20층
(서초동, 강남교보타워) 본점 회의실

참 석 자:

총 이사의 수 : 3명	출석이사의 수 : 3명
총 감사의 수 : 1명	출석감사의 수 : 1명

의장인 대표이사 박영희는 의장석에 등단한 후 본 회의가 적법하게 성립됨을 설명하고 개회를 선언하다.

의 안: 주식양도담보권 설정 계약 승인의 건

의장은 주식양도담보권 설정 계약 승인에 관하여 배부한 이사회자료를 통하여 설명한 후, 이를 참석이사들의 심의를 구한 즉, 전원 이의 없이 찬성함에 따라 제1호 의안을 승인 가결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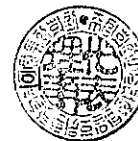
의장은 이상으로 금일의 의안이 전부 심의 종료되었음을 설명한 후 오전 11시 30분에 폐회를 선언하다.

위 결의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이 의사록을 작성하고 의장과 출석한 이사들이 다음에 기명 날인하다.

2024년 11월 05일

주식회사 마스틴제십일호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의장: 대 표 이 사 박 영



기타비상무이사

김 상



기타비상무이사

김 대



감 사

이 석



2024년 제7차
이사회자료



(주)마스틴제십일호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마스틴제십일호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2024년 제7차 이사회 자료

◇ 일 시 : 2024년 11월 5일(화) 오전 11시

◇ 장 소 : 서울시 서초구 강남대로 465, A동 20층
(서초동, 강남교보타워) 본점 회의실

◇ 안 건

- 안 건 1. 주식양도담보권 설정 계약 승인의 건



안건 1

주식양도담보권 설정 계약 승인의 건

□ 목적

- (주)마스텐제십일호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의 주식양도담보권 설정 계약 승인의 건

□ 관련 규정

당사 정관

▶ 제12조 (주식 양도의 제한)

회사가 발행한 보통주식의 주주가 보유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해당 주주는 해당 주식의 양도에 관하여 이사회 승인을 받아야 하고, 이에 위반하여 이사회 승인을 얻지 아니한 주식의 양도는 회사에 대하여 효력이 없다.

▶ 제18조(주식의 명의개서)

- ① 회사의 명의개서 업무는 회사가 업무를 위탁한 일반사무수탁회사에서 수행한다.
- ② 회사의 주식에 대하여 명의개서를 청구할 때에는 소정의 청구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양도의 경우에는 그 주권
- ③ 일반사무수탁회사는 일반사무위탁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대행기관에 명의개서에 관한 업무를 위임할 수 있다.

▶ 제43조 (이사회 결의사항)

17. 기타 회사의 경영에 관한 중요 사안

□ 내용

1. 주식회사마스텐제십일호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와 관련하여 채무자의 피담보채무 이행을 담보할 목적으로 주식양도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며, 주식양도권설정계약 체결 후 주식의 명의개서를 진행하고자 함.

별첨. 주식양도담보권 설정계약서(안) 끝.